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Ⅵ) (채권유동화목적 가계대출용)

(작성일자 : 20 . .)

본인확인자	팀 원	팀 장	부점장

- 본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은행”)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화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 변동금리대출은 대출기간 중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은행이 수행하는 채권유동화업무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의 승계인 또는 수탁인 등 제3자에게 양도(신탁 포함)하는 약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동 채권유동화를 위하여 본건 대출 및 담보권이 양도(신탁 포함)되는 경우 채권양수인이 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이 약정서에 따라 본건 대출을 상환할 것을 약약합니다.
-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추가하여 은행이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건 대출과 관련한 본인의 신용정보를 대출채권(또는 대출채권담보부채권, 유동화증권)의 투자자,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주소	

제조 거래조건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합니다.)

① 대출과목(종류)			② 거래구분	개별거래	
③ 대출금액	금 원 (₩)				
④ 대출개시일	☐ 20 년 월 일 ☐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합니다.				
⑤ 대출기간	()년 ()개월 ※ 대출기간 만료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기재		⑥ 대출기간만료일	20 년 월 일	
⑦ 대출이자율	☐ 변동금리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가계용)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기본금리	☐ MOR + ()%		금리재산정주기 : 매 ()개월
		우대금리	대출실행시 적용 우대금리는 연 ()%로 이후에는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최종금리	기본금리 - [우대금리 ()%]로 결정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⑧ 이자 및 지연 배상금 계산방법	이자는(☐ 일단위 일계산, ☐ 월단위 월계산, ☐ 월단위 일계산), 지연배상금은 일단위로 계산하며, 제6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이 적용 됩니다. 다만, 일단위 일계산 및 월단위 일계산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계산합니다.				
⑨ 약정수수료	대출금액의 ()% 또는 금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⑩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후 ()개월(기안연장포함)까지 발생하며, 수수료율은 ()%로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제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기로 합니다. ☐ 해당 없음				
⑪ 대출실행방법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⑫ 상환방법	☐ 일시상환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분할상환	☐ 거치기간 신청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개월동안 거치하고, 거치기간 경과후에는 매 ()개월마다 우측 상환방법 선택에 따라 해당 이자지급일에 분할상환합니다.		
		☐ 거치기간 미신청	매 ()개월마다 우측 상환방법 선택에 따라 해당 이자지급일에 분할상환합니다.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원금균등 분할상환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고객원금지정 분할상환 (매월 상환할 할부원금 : 원) ☐ 혼합상환 (만기일시상환할 대출금 : 원)		
⑬ 이자·할부금 지급시기 및 방법	☐ 최초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그 이후 이자는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부터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이자·할부금은 [☐ 대출개시 해당일 / ☐ 매월 ()일(납부일)]에 지급합니다. ※ 이자·할부금 지급일 해당월에 지급일이 없는 경우 그달의 마지막 날을 지급일로 합니다. ※ 이자·할부금의 지급은 원단위로 하되, 고객님께서 별도 요청하는 경우 1,000원단위로 지급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지급합니다.				
⑭ 서면통보 등 생략신청	☐ 대출취급 및 상환기일을 연장 할 때 실행사실에 대한 서면통보를 생략함에 동의합니다. ☐ 이자 또는 할부금 등을 납입지체 할 때 동 사실의 서면통보 없이 대출금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에 동의합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여유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료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은행의 다음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조 대출금 수령계좌 지정·수령위임 표시

대출금수령계좌	계좌번호 :
	예금주 :
위임자(채무자)	(서명 또는 인)

제3조 기타 특약사항

(서명 또는 인)



제4조 대출채권의 양도·신탁 승낙 및 피담보채권의 확정 특약사항

- ① 본인은 은행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채권유동화를 위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의 승계인 또는 수탁인 등 제3자에게 양도(신탁 포함)하는 약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은행의 대출채권 유동화업무에 관련된 제반 행정적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기로 합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해 채권양수인이 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로 하되,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도통지를 실제로 받을 시점까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은 제1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이 이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확정됨에 동의하며, 본인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 등을 위하여 이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은행이 채권양도통지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고시하며,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양도사실을 알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은행에 이를 알리고 본 약정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대출이자율의 적용 및 변동

- ① 제1조 제7항의 대출이자율 중 'MOR' 또는 'COFIX'를 기준으로 약정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을 실행하는 날의 'MOR' 또는 'COFIX' 금리에 따라 고객님의 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적용할 대출이자율을 대출거래장에 표시하고, 개별통지는 생략합니다. 다만, 대출실행내역 통지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신청한 통지방법에 따라 개별통지 합니다.
- ② 제1조 제7항의 'MOR'과 'COFIX'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됩니다.
 1. 'MOR': 'MOR'은 제1조 제7항에서 선택한 '금리재산정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개월'인 경우 'MOR'은 'CD 91일물 유통수익률', '6개월'이상인 경우 'MOR'은 '금리재산정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과 동일한 잔존만기를 가진 'AAA 등급 금융채유통수익률'을 각각 사용합니다. 현재 은행이 사용하는 'MOR'의 'CD 91일물 유통수익률'과 '금융채유통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전 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입니다. 이 'MOR'의 적용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91일물 CD 거래 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 ※ CD 91일물 유통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입니다.
 -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시 비상계획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3개월물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예시) : 사용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 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2. 'COFIX'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시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 'COFIX'의 적용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 COFIX 전국은행연합회 고시 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 ③ 대출실행일에 결정된 대출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변동됩니다.
 1. 'MOR'에 연동하는 대출 : 대출실행일부터 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제2항에 의해 정해진 'MOR'과 제10조에 의해 정해진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2. 'COFIX'에 연동하는 대출 : 대출실행일부터 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날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COFIX'와 제10조에 의해 정해진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제6조 지연배상금 및 지연배상금률

- ① 이자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이 납입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제3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등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③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 제7항에 의해 결정된 대출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되며,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체가산율(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1개월 이내 연체한 대출 : 연체발생일부터 연6%,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연체한 대출 : 연체발생일부터 연7%
 - 3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대출 : 연체발생일부터 연8%
 2. 최고 지연배상금률
 - 연15%. 다만, 제1조 제7항의 대출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2%를 더한 율을 적용하고, 법적절차 착수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최고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합니다.

제7조 중도상환수수료

-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기간 중에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으로 합니다.
 1. 수수료율은 제1조 제10항에서 정한 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대출기간 중에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대출취급 당시의 수수료율에 따르기로 합니다.
 2. 잔존일수는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제1조 제4항의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만료일까지의 일수에서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되,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만료일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 되는 날을 대출만료일로 합니다.

3. 대출기간은 대출실행방법에 관계없이 제1조 제4항의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만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만료일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 되는 날을 대출만료일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제1조 제10항에서 정한 기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④ 제2항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제4조 제3항에 의한 대출금 해지(상환)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⑤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매월 납부하는 할부금에 포함된 대출원금
 2.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대출금을 기일전에 회수하는 경우
 3.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10조(은행으로부터 상계)의 사유로 예금과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하는 경우
 4. 잔여대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다만, 잔여대출기간은 기한전 중도상환일 다음날부터 대출만료일까지 기간으로서 월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제8조 대출금 상환방법

- ① 일시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② 분할상환방식
1.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2.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원금을 상환합니다.
 3.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4. 고객원금지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제1조 제11항의 상환방법에서 고객님이 지정한 할부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제1조 제11항의 상환방법에서 고객님의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제9조 대출금 수령 위임

본인이 은행으로부터 이 약정서에 의해 대출을 받음에 있어 동 대출금 (부대 비용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수령할 권한을 제2조와 같이 위임하며, 이에 따른 분쟁 등이 있을 경우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우대금리 및 적용기준

- ① 제1조 제7항의 대출이자율의 우대금리는 아래의 우대항목 중 선택한 항목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며, 우대금리 적용기준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되는 해당 항목은 “☐” 내에 은행직원이 “v” 표시하고, 본인이 확인합니다.)

우대항목	우대기간	우대금리
☐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최초로 도래하는 금리재산정일까지는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우대하되, 이후 금리재산정일 마다 우대율은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금액별 우대율을 변경 적용	연 ()%
☐ 'KB급여이체 신용대출' 기본우대	최초로 도래하는 금리재산정일까지는 우대하되, 이후 금리재산정일 마다 우대율은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변경 적용	연 ()%
☐ 급여(연금)이체 실적우대	최초로 도래하는 금리재산정일까지는 우대하되, 이후 금리재산정일 마다 우대율은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변경 적용	연 ()%
☐ 자동이체 실적우대	최초로 도래하는 금리재산정일까지는 우대하되, 이후 금리재산정일 마다 우대율은 자동이체 실적에 따라 변경 적용	연 ()%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대출만료일까지 적용하되, 자동기한연장이 되는 경우 기한연장 후 대출만료일까지 적용	연 ()%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Ⅰ)	대출만료일까지 적용하되, 자동기한연장이 되는 경우 기한연장 후 대출만료일까지 적용	연 ()%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Ⅱ)	최초 도래하는 대출만료일까지만 적용	연 ()%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Ⅲ)	대출실행(기한연장, 조건변경 등 포함)일로부터 ()일 또는 ()개월까지 적용	연 ()%

- ② 제1항의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Ⅲ)”의 우대기간이 종료된 이후 또는 금리재산정일에 제3항의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에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각 우대항목별 우대금리만큼 대출금리가 상승합니다.

③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

1.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KB국민카드'사의 개인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금리재산정시점의 금리재산정주기에 해당하는 기간별 카드이용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다만, 기준일 현재 신용카드 연체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3/6/12개월 신용카드 이용금액	우대금리
100만원/150만원/300만원 이상	연 0.10%
200만원/300만원/600만원 이상	연 0.20%
300만원/450만원/900만원 이상	연 0.30%

- 가. 24/36/60개월 변동(고정)금리대출은 최근 12개월간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나. 금리재산정시점이 매월 10일 이전인 경우 '전전월말' 기준 최근 3/6/12개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금리재산정시점이 매월 11일 이후인 경우에는 '직전월말' 기준 최근 3/6/12개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다. 실적산정기간 내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전표가 익월 5일까지 KB국민카드사에 매입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용금액은 다음 금리산정기간의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라. 신용카드 이용금액에서 현금서비스금액, 연회비, 제 수수료,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2. 'KB급여이체 신용대출' 기본우대 : 'KB급여이체 신용대출'에 대하여 은행에 급여이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금리재산정시점 직전월의 말일 기준 최근 4개월간 3회 이상 은행으로 급여(연금)이체가 되고 이체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3. 급여(연금)이체 실적우대 : 가 또는 나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가. 은행에 급여(연금)이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금리재산정시점 직전월의 말일 기준 최근 4개월간 3회 이상 은행으로 급여(연금)이체가 되고 이체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나. 은행에 급여(연금)이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금리재산정시점 직전월의 말일 기준 최근 4개월간 3회 이상 「직장인우대종합통장」, 「KB★Story통장」으로 당타
행을 통해 고객이 지정한 일자(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급여(연금)이체가 되고 이체실적(건별 50만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급여(연금)이체일자가 변경된
경우 영업점에 해당사실을 통지하고 변경등록 하여야 합니다)

4. 자동이체 실적우대 : 금리재산정시점 기준 최근 2개월간 매월 자동이체 3건이상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재산정시점이 매월 10일 이전인 경우 '전전월말'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매월 자동이체 3건이상 자동이체 출금실적을 적용하며, 금리재산정시점이 매월 11일 이
후인 경우 '직전월말'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매월 자동이체 3건이상 자동이체 출금실적을 적용합니다.)

단, 자동이체 출금실적은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지로 자동이체, 금융결제원 CMS, 펌 뱅킹에 한해 인정되며, 계좌간 자동이체는 제외됩니다.

5.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이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합니다.

6.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Ⅰ, Ⅱ, Ⅲ) : 은행 거래실적이 우수하거나 거래실적 증대가 예상되는 경우 적용합니다.

제11조 담보, 보험 및 추가담보 제공

- ① 본인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건설 또는 구입하는 시설물과 건물(대출 받은 토지 위에 건설하는 시설물, 건물 포함)은 건설도중이나 건설완료 후에도 은행의 승인 없이 그
소유권 이전행위,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등기,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제3자로부터 은행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기로 하며, 동 시설
물과 건물은 토지와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설정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이 담보로 제공할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및 등기부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지적정리 완료 후에도 제1항을 준용하기로 합니다.
- ③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감소(후취담보취득시 포함)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6조(담보의 제공)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2조 대출금 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 ① 대출을 받은 후 당해 시설물과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은행이 인정하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합니다.
- ②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 등에 의해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사전 통지하여 매수인 등 제3자 앞 채무인수 가
능여부(채무인수인의 연령 등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의 신규대출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은행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 앞 채무인수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14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적용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됩니다. 추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수입인지 붙이는 곳

-----[대출거래약정 끝]-----

[자동이체 (□ 신청 □ 미신청)]

본인은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아래의 계좌간 자동이체약관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연결계좌번호		이 체 일	매월 _____ 일
이 체 한 도	☐ 대출한도 이내(신청이 없는 경우 포함) ☐ 예금잔액 이내	비 용 처 리	☐ 제 비용은 출금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

제1조 [자동이체 방법] ① 은행은 거래처의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영업시간 이내 입금분에 한합니다)을 입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다만, 입금계좌가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18시 전 입금분에 한해 입금계좌로 이체합니다.

② 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합니다. 다만, 정기예금 및 신탁 월지급 이자는 그 전 영업일에 이체합니다.

③ 통장자동대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이체합니다. 다만, 고객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금잔액 이내에서만 이체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지급자금 부족 때의 처리] ①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영업시간 이내 입금 분에 한합니다) 합니다.

다만, 이체주기를 매 영업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도 이체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입금계좌가 대출계좌, 집합투자기(펀드),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여러 건의 이체처리] 같은 날에 이체대상이 여러 건 있는 때 이체처리순서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증권의 부도] 거래처의 출금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 거절되었을 때는 자동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합니다.

제5조 [신청내용의 변경, 해지신고] 거래처가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까지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6조 [이체일 및 이체금액 미지정때 처리]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채무 등 이체대상만을 지정하고 이체일 및 금액에 대한 지정 없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는 은행은 그 대상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체합니다.

제7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6개월 이상 이체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이체 등록을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입금계좌가 퇴직연금인 경우 6개월이상 이체되지 않더라도 등록을 해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 [외화예금 자동이체 적용환율] 원화계좌에서 외화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처리일 이체시점의 대고객 전산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제9조 [적립식 집합투자기(펀드) 자동이체 처리] ① 입금계좌가 집합투자기(펀드)인 경우 지정일에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별도의 신탁계정에 예치 후, 집합투자기(펀드)별 규약에서 정한 판매가격(매입기준가격) 적용일에 입금계좌로 이체합니다.

②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자동이체 처리가 불가합니다.

③ 단기금융집합투자기(MMF)가 지급계좌일 경우에는 이체금액을 별도로 신탁계정에 예치하지 않고 이체금액만큼 지급 정지되며, 각각의 집합투자기규약에서 정한 매입기준가격 적용일에 출금하여 입금계좌로 이체합니다.

제10조 [대출계좌 자동이체 처리] ①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당일 중 지정된 대출계좌로 이체합니다.

②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이체금액에 부족할 경우 약정납입일 전일까지는 부족한 금액이 채워지는 날 이체됩니다. 다만, 약정납입일 부터는 영업시간 마감 이후 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일시상환은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 이내에서 약정이자를 일단위로 이체합니다.

2. 분할상환은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1천원 이상일 경우 할부금을 일단위로 이체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대출, 정책자금, 파생연계상품 등은 제2조 본문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납부할 할부금의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연체기준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11조 [퇴직연금 자동이체 처리]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이체금액에 부족한 경우 이체지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됩니다.

제12조 [계좌이동서비스] ① 계좌간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거래처는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거래처가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서 자동이체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은행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중 사전에 합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 시행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며,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 은행에 신고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거래처는 은행에 신고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변경시 즉시 은행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거래처가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준용] ① 계좌간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자유로운예금약관, 관련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Ⅵ) (채권유동화목적 가계대출용)

(작성일자 : 20 . .)

- 본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은행”)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화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 변동금리대출은 대출기간 중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은행이 수행하는 채권유동화업무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의 승계인 또는 수탁인 등 제3자에게 양도(신탁 포함)하는 약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동 채권유동화를 위하여 본건 대출 및 담보권이 양도(신탁 포함)되는 경우 채권양수인이 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이 약정서에 따라 본건 대출을 상환할 것을 약약합니다.
-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추가하여 은행이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건 대출과 관련한 본인의 신용정보를 대출채권(또는 대출채권담보부채권, 유동화증권)의 투자자,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주소	

제조 거래조건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합니다.)

① 대출과목(종류)			② 거래구분	개별거래	
③ 대출금액	금 원 (₩)				
④ 대출개시일	☐ 20 년 월 일 ☐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합니다.				
⑤ 대출기간	()년 ()개월 ※ 대출기간 만료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기재		⑥ 대출기간만료일	20 년 월 일	
⑦ 대출이자율	☐ 변동금리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가계용)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기본금리	☐ MOR + ()%		금리재산정주기 : 매 ()개월
		우대금리	대출실행시 적용 우대금리는 연 ()%로 이후에는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최종금리	기본금리 - [우대금리 ()%],로 결정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⑧ 이자 및 지연 배상금 계산방법	이자는(☐ 일단위 일계산, ☐ 월단위 월계산, ☐ 월단위 일계산), 지연배상금은 일단위로 계산하며, 제6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이 적용 됩니다. 다만, 일단위 일계산 및 월단위 일계산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계산합니다.				
⑨ 약정수수료	대출금액의 ()% 또는 금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⑩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후 ()개월(기안연장포함)까지 발생하며, 수수료율은 ()%로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제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기로 합니다. ☐ 해당 없음				
⑪ 대출실행방법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⑫ 상환방법	☐ 일시상환	대출기간 중에는 이지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분할상환	☐ 거치기간 신청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개월동안 거치하고, 거치기간 경과후에는 매 ()개월마다 우측 상환방법 선택에 따라 해당 이자지급일에 분할상환합니다.		
		☐ 거치기간 미신청	매 ()개월마다 우측 상환방법 선택에 따라 해당 이자지급일에 분할상환합니다.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원금균등 분할상환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고객원금지정 분할상환 (매월 상환할 할부원금 : 원) ☐ 혼합상환 (만기일시상환할 대출금 : 원)		
⑬ 이자·할부금 지급시기 및 방법	☐ 최초 이자는 대출개시일부터 ()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그 이후 이자는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부터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이자·할부금은 [☐ 대출개시 해당일 / ☐ 매월 ()일(납부일)]에 지급합니다. ※ 이자·할부금 지급일 해당월에 지급일이 없는 경우 그달의 마지막 날을 지급일로 합니다. ※ 이자·할부금의 지급은 원단위로 하되, 고객님께서 별도 요청하는 경우 1,000원단위로 지급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중에는 이지만 지급합니다.				
⑭ 서면통보 등 생략신청	☐ 대출취급 및 상환기일을 연장 할 때 실행사실에 대한 서면통보를 생략함에 동의합니다. ☐ 이자 또는 할부금 등을 납입지체 할 때 동 사실의 서면통보 없이 대출금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에 동의합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여부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료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은행의 다음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조 대출금 수령계좌 지정·수령위임 표시

대출금수령계좌	계좌번호 :
	예금주 :
위임자(채무자)	(서명 또는 인)

제3조 기타 특약사항

(서명 또는 인)

제4조 대출채권의 양도·신탁 승낙 및 피담보채권의 확정 특약사항

- ① 본인은 은행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채권유동화를 위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의 승계인 또는 수탁인 등 제3자에게 양도(신탁 포함)하는 약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은행의 대출채권 유동화업무에 관련된 제반 행정적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기로 합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해 채권양수인이 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로 하되,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도통지를 실제로 받을 시점까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은 제1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이 이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확정됨에 동의하며, 본인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 등을 위하여 이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은행이 채권양도통지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고시하며,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양도사실을 알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은행에 이를 알리고 본 약정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대출이자율의 적용 및 변동

- ① 제1조 제7항의 대출이자율 중 'MOR' 또는 'COFIX'를 기준으로 약정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을 실행하는 날의 'MOR' 또는 'COFIX' 금리에 따라 고객님의 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적용할 대출이자율을 대출거래장에 표시하고, 개별통지는 생략합니다. 다만, 대출실행내역 통지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신청한 통지방법에 따라 개별통지 합니다.
- ② 제1조 제7항의 'MOR'과 'COFIX'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됩니다.
 1. 'MOR': 'MOR'은 제1조 제7항에서 선택한 '금리재산정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개월'인 경우 'MOR'은 'CD 91일물 유통수익률', '6개월'이상인 경우 'MOR'은 '금리재산정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과 동일한 잔존만기를 가진 'AAA 등급 금융채유통수익률'을 각각 사용 합니다. 현재 은행이 사용하는 'MOR'의 'CD 91일물 유통수익률'과 '금융채유통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증가입니다. 이 'MOR'의 적용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91일물 CD 거래 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 ※ CD 91일물 유통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입니다.
 -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시 비상계획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3개월물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예시) : 사용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 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 'COFIX'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시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 'COFIX'의 적용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 COFIX 전국은행연합회 고시 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 ③ 대출실행일에 결정된 대출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변동됩니다.
 1. 'MOR'에 연동하는 대출 : 대출실행일부드 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제2항에 의해 정해진 'MOR'과 제10조에 의해 정해진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2. 'COFIX'에 연동하는 대출 : 대출실행일부드 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날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COFIX'와 제10조에 의해 정해진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제6조 지연배상금 및 지연배상금률

- ① 이자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이 납입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제3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등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③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 제7항에 의해 결정된 대출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되며,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체가산율(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1개월 이내 연체한 대출 : 연체발생일부드 연6%,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연체한 대출 : 연체발생일부드 연7%
 - 3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대출 : 연체발생일부드 연8%
 2. 최고 지연배상금률
 - 연15%. 다만, 제1조 제7항의 대출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2%를 더한 율을 적용하고, 법적절차 착수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최고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합니다.

제7조 중도상환수수료

-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기간 중에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으로 합니다.
 1. 수수료율은 제1조 제10항에서 정한 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대출기간 중에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대출취급 당시의 수수료율에 따르기로 합니다.
 2. 잔존일수는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제1조 제4항의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만료일까지의 일수에서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되,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만료일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 되는 날을 대출만료일로 합니다.

3. 대출기간은 대출실행방법에 관계없이 제1조 제4항의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만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만료일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 되는 날을 대출만료일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제1조 제10항에서 정한 기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④ 제2항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제4조 제3항에 의한 대출금 해지(상환)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⑤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매월 납부하는 할부금에 포함된 대출원금
 2.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대출금을 기일전에 회수하는 경우
 3.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10조(은행으로부터 상계)의 사유로 예금과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하는 경우
 4. 잔여대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다만, 잔여대출기간은 기한전 중도상환일 다음날부터 대출만료일까지 기간으로서 월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제8조 대출금 상환방법

- ① 일시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② 분할상환방식
 1.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2.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원금을 상환합니다.
 3.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4. 고객원금지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제1조 제11항의 상환방법에서 고객님이 지정한 할부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제1조 제11항의 상환방법에서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제9조 대출금 수령 위임

본인이 은행으로부터 이 약정서에 의해 대출을 받음에 있어 동 대출금 (부대 비용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수령할 권한을 제2조와 같이 위임하며, 이에 따른 분쟁 등이 있을 경우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우대금리 및 적용기준

- ① 제1조 제7항의 대출이자율의 우대금리는 아래의 우대항목 중 선택한 항목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며, 우대금리 적용기준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되는 해당 항목은 “☐” 내에 은행직원이 “v” 표시하고, 본인이 확인합니다.)

우대항목	우대기간	우대금리
☐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최초로 도래하는 금리재산정일까지는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우대하되, 이후 금리재산정일 마다 우대율은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금액별 우대율을 변경 적용	연 ()%
☐ 'KB급여이체 신용대출' 기본우대	최초로 도래하는 금리재산정일까지는 우대하되, 이후 금리재산정일 마다 우대율은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변경 적용	연 ()%
☐ 급여(연금)이체 실적우대	최초로 도래하는 금리재산정일까지는 우대하되, 이후 금리재산정일 마다 우대율은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변경 적용	연 ()%
☐ 자동이체 실적우대	최초로 도래하는 금리재산정일까지는 우대하되, 이후 금리재산정일 마다 우대율은 자동이체 실적에 따라 변경 적용	연 ()%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대출만료일까지 적용하되, 자동기한연장이 되는 경우 기한연장 후 대출만료일까지 적용	연 ()%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Ⅰ)	대출만료일까지 적용하되, 자동기한연장이 되는 경우 기한연장 후 대출만료일까지 적용	연 ()%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Ⅱ)	최초 도래하는 대출만료일까지만 적용	연 ()%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Ⅲ)	대출실행(기한연장, 조건변경 등 포함)일로부터 ()일 또는 ()개월까지 적용	연 ()%

- ② 제1항의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Ⅲ)”의 우대기간이 종료된 이후 또는 금리재산정일에 제3항의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에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각 우대항목별 우대금리만큼 대출금리가 상승합니다.

③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

1.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KB국민카드'사의 개인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금리재산정시점의 금리재산정주기에 해당하는 기간별 카드이용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다만, 기준일 현재 신용카드 연체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3/6/12개월 신용카드 이용금액	우대금리
100만원/150만원/300만원 이상	연 0.10%
200만원/300만원/600만원 이상	연 0.20%
300만원/450만원/900만원 이상	연 0.30%

가. 24/36/60개월 변동(고정)금리대출은 최근 12개월간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나. 금리재산정시점이 매월 10일 이전인 경우 '전전월말' 기준 최근 3/6/12개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금리재산정시점이 매월 11일 이후인 경우에는 '직전월말' 기준 최근 3/6/12개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 실적산정기간 내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전표가 익월 5일까지 KB국민카드사에 매입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용금액은 다음 금리산정기간의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라. 신용카드 이용금액에서 현금서비스금액, 연회비, 제 수수료,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2. 'KB급여이체 신용대출' 기본우대 : 'KB급여이체 신용대출'에 대하여 은행에 급여이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금리재산정시점 직전월의 말일 기준 최근 4개월간 3회 이상 은행으로 급여(연금)이체가 되고 이체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3. 급여(연금)이체 실적우대 : 가 또는 나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가. 은행에 급여(연금)이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금리재산정시점 직전월의 말일 기준 최근 4개월간 3회 이상 은행으로 급여(연금)이체가 되고 이체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나. 은행에 급여(연금)이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금리재산정시점 직전월의 말일 기준 최근 4개월간 3회 이상 「직장인우대종합통장」, 「KB★Story통장」으로 당타
행을 통해 고객이 지정한 일자(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급여(연금)이체가 되고 이체실적(건별 50만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급여(연금)이체일자가 변경된
경우 영업점에 해당사실을 통지하고 변경등록 하여야 합니다)

4. 자동이체 실적우대 : 금리재산정시점 기준 최근 2개월간 매월 자동이체 3건이상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재산정시점이 매월 10일 이전인 경우 '전전월말'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매월 자동이체 3건이상 자동이체 출금실적을 적용하며, 금리재산정시점이 매월 11일 이
후인 경우 '직전월말'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매월 자동이체 3건이상 자동이체 출금실적을 적용합니다.)

단, 자동이체 출금실적은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지로 자동이체, 금융결제원 CMS, 펌 뱅킹에 한해 인정되며, 계좌간 자동이체는 제외됩니다.

5.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이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합니다.

6.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Ⅰ, Ⅱ, Ⅲ) : 은행 거래실적이 우수하거나 거래실적 증대가 예상되는 경우 적용합니다.

제11조 담보, 보험 및 추가담보 제공

- ① 본인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건설 또는 구입하는 시설물과 건물(대출 받은 토지 위에 건설하는 시설물, 건물 포함)은 건설도중이나 건설완료 후에도 은행의 승인 없이 그
소유권 이전행위,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등기,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제3자로부터 은행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기로 하며, 동 시설
물과 건물은 토지와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설정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이 담보로 제공할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및 등기부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지적정리 완료 후에도 제1항을 준용하기로 합니다.
- ③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감소(후취담보취득시 포함)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6조(담보의 제공)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2조 대출금 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 ① 대출을 받은 후 당해 시설물과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은행이 인정하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합니다.
- ②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 등에 의해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사전 통지하여 매수인 등 제3자 앞 채무인수 가
능여부(채무인수인의 연령 등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의 신규대출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은행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 앞 채무인수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14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적용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됩니다. 추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수입인지 붙이는 곳

-----[대출거래약정 끝]-----

[자동이체 (□ 신청 □ 미신청)]

본인은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아래의 계좌간 자동이체약관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연결계좌번호		이 체 일	매월 _____ 일
이 체 한 도	☐ 대출한도 이내(신청이 없는 경우 포함) ☐ 예금잔액 이내	비 용 처 리	☐ 제 비용은 출금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

제1조 [자동이체 방법] ① 은행은 거래처의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영업시간 이내 입금분에 한합니다)을 입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다만, 입금계좌가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18시 전 입금분에 한해 입금계좌로 이체합니다.

② 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합니다. 다만, 정기예금 및 신탁 월지급 이자는 그 전 영업일에 이체합니다.

③ 통장자동대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이체합니다. 다만, 고객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금잔액 이내에서만 이체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지급자금 부족 때의 처리] ①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영업시간 이내 입금 분에 한합니다) 합니다.

다만, 이체주기를 매 영업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도 이체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입금계좌가 대출계좌, 집합투자기(펀드),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여러 건의 이체처리] 같은 날에 이체대상이 여러 건 있는 때 이체처리순서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증권의 부도] 거래처의 출금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 거절되었을 때는 자동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합니다.

제5조[신청내용의 변경, 해지신고] 거래처가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까지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6조[이체일 및 이체금액 미지정때 처리]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채무 등 이체대상만을 지정하고 이체일 및 금액에 대한 지정 없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는 은행은 그 대상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체합니다.

제7조[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6개월 이상 이체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이체 등록을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입금계좌가 퇴직연금인 경우 6개월이상 이체되지 않더라도 등록을 해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외화예금 자동이체 적용환율] 원화계좌에서 외화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처리일 이체시점의 대고객 전산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제9조[적립식 집합투자기(펀드) 자동이체 처리] ① 입금계좌가 집합투자기(펀드)인 경우 지정일에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별도의 신탁계정에 예치 후, 집합투자기(펀드)별 규약에서 정한 판매가격(매입기준가격) 적용일에 입금계좌로 이체합니다.

②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자동이체 처리가 불가합니다.

③ 단기금융집합투자기(MMF)가 지급계좌일 경우에는 이체금액을 별도로 신탁계정에 예치하지 않고 이체금액만큼 지급 정지되며, 각각의 집합투자기규약에서 정한 매입기준가격 적용일에 출금하여 입금계좌로 이체합니다.

제10조[대출계좌 자동이체 처리] ①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당일 중 지정된 대출계좌로 이체합니다.

②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이체금액에 부족할 경우 약정납입일 전일까지는 부족한 금액이 채워지는 날 이체됩니다. 다만, 약정납입일 부터는 영업시간 마감 이후 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일시상환은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 이내에서 약정이자를 일단위로 이체합니다.

2. 분할상환은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1천원 이상일 경우 할부금을 일단위로 이체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대출, 정책자금, 파생연계상품 등은 제2조 본문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납부할 할부금의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연체기준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11조[퇴직연금 자동이체 처리]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이체금액에 부족한 경우 이체지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됩니다.

제12조[계좌이동서비스] ① 계좌간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거래처는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거래처가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서 자동이체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은행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중 사전에 합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 시행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며,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 은행에 신고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거래처는 은행에 신고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변경시 즉시 은행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거래처가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준용] ① 계좌간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자유로운예금약관, 관련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관련 고객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 · 이용 ·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 · 이용 ·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마케팅 활용 중단 신청

가.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귀행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행에 제공 · 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주1}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 · 활용 중단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단서)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마케팅 활용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 www.kbstar.com
- 전화접수 : 당행 콜센터 1588-9999, 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688
- 서면접수 : 당행 전 영업점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행의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전국은행연합회(민원상담실), 금융감독원(금융민원실)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 연락처 : 정보보호부 02-2073-6745,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
- 은행연합회 : 민원상담실 1544-1040,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19(명동 1가)
- 금융감독원 : 금융민원실 13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3.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자기정보결정권

가.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 개인(신용)정보의 정정 · 삭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당행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이용 · 제공사실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 · 제공한 경우 매1년마다 이용 · 제공 현황을 통보해줄 것을 “정기통지 신청”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 당행과의 금융거래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시 당행이 보유한 본인 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요청권(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금융회사가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연락중지 청구권(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휴대폰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사이렌24, 올크레딧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레딧 : 02) 1588-2486, www.mycredit.co.kr
- 크레딧뱅크 : 02) 3771-1004, www.creditbank.co.kr
- 사이렌24 : 02) 1577-1006, www.siren24.com
- 올크레딧 : 02) 708-1000, www.allcredit.co.kr

4.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